

## 임용결격 사유

- ◎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◎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◎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◎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◎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- ◎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◎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◎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
- ◎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
- ◎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